

1. 개정이유

자동차제작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, 중형자동차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현실화 하고,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성능기준을 일원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, 이삿짐운반,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·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(안 제8조)
- 나.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(안 제88조의3, 제89조의2, 별표 6, 별표 6의29)
- 다.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점등조건 확대(안 별표 6의19)
- 라. 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 동일하게 ± 100 킬로그램 또는 ± 3 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(안 별표33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특기할 사항 없음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본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 작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
2. 고소작업·방송중계·교량점검·이삿짐운반·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

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“특수작업형”을 “특수용도형”으로 한다.

제88조의3 중 “별표 6의 기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”으로 한다.

제89조의2 중 “승합자동차(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)와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에”를 “제14조의2에 따라”로 하고, “별표 6의 29의 기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”으로 한다.

별표 6을 삭제한다.

별표 6의19 제1호가목 중 “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”을 “제44조에 따른 방향지시등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될 경우 동시에 작동될”로 하고, 같은 목에 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모든 앞면방향지시등(카테고리-1 또는 1a 또는 1b)이 동일한 방식(점멸 또는 순차적 점등)으로 점등될 경우
- 2) 모든 뒷면방향지시등(카테고리-2a 또는 2b)이 동일한 방식(점멸 또는 순차적 점등)으로 점등될 경우

별표 6의29를 삭제한다.

별표 3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원 종 별	길이 (mm)	너비 (mm)	높이 (mm)	윤간 거리 (mm)	축간 거리 (mm)	오우버행 (mm)	객실 및 하대 (mm)			차량중량(kg)
							길이	너비	높이	
경 형 및 소형자동차	±4 0	±3 0	±5 0	±3 0	±3 0	±30	±3 0	±3 0	±3 0	±60
중형 및 대형자동차	±5 0	±4 0	±6 0	±4 0	±3 0	±40	±5 0	±3 0	±3 0	±100 또는 ±3% 중 큰 허용차 적용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

일 이후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	제8조(최대안전경사각도) 자동차 (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)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 차로서 고소작업 · 방송중계 · 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 · 장치를 갖춘 자동차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</u> 1. 2. (생 략)		
		제8조(최대안전경사각도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. <단서 삭제>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<u>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 차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1. <u>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 작 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 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</u> 2. <u>고소작업 · 방송중계 · 교량점검 · 이삿짐운반 · 소방 등 특정 작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</u>		
		제15조의2(자동차안정성 제어장 치)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		
		제15조의2(자동차안정성 제어장 치) ① -----		

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
외한다.

1. 2. (생략)

3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
동차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,
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
업형 특수자동차

4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8조의3(타이어공기압경고장
치)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
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
· 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
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
다.

제89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 승
합자동차(경형승합자동차는 제
외한다)와 차량총중량 3.5톤 초
과 화물·특수자동차에 설치되
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별표 6
의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
다.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특수용
도형 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8조의3(타이어공기압경고장
치) -----
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하는 세부기준-----.

제89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 제1
4조의2에 따라 -----

----- 국토교
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
부기준-----.